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. 9. 22 선고 2015가합5123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 고 1. F

2. G

3. H

변론 종결 2016. 9. 1.

판결 선고 2016. 9. 22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들에게, 1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, 4항

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45 지분에 관하여, 2 피고 G은 별지 목록제3,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4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,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15지분에 관하여, 3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45지분 및 별지 목록 제5,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15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I은 1964. 6. 8.부터 1977. 8. 4.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하고,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'이 사건 제1부동산', '이 사건 제2부동산' 등의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3. 10. 17. 사망하였다.

나. 망 I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J과 자녀들인 K 및 원고들이 있었는데, K은 1994. 11.19. 마을주민인 L, M, N로부터 "K이 1983. 10. 17.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망 I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."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1995. 4. 7. 구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, 이하 '특별조치법'이라 한다)」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K은 2013. 5. 11. 사망하였고, 망 K의 처인 피고 F는 2013. 11. 20. 이 사건 제1,2부동산 및 이 사건 제3, 4부동산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, 망 K의 아들인 피고 G, H는 같은 날 각각 이 사건 제3, 4부동산 중 각 1/3 지분 및 이 사건 제5, 6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 요지

가.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I의 처인 J과 자녀들인 망 K 및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인데, 망 K은 L, M, N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보증서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J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, 망 K이 망 I의 장남으로서 집안의 재산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망 K의 명의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추인하였으므로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다.

다.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들로서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데, 위 명의신탁약정은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이하 '부동산실명법'이라 한다)」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,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는 "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 있고, 제2항에 서는 "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."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1995. 4. 7.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2015. 6. 18.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

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도과 후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,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

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,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들을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, 위와 같은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(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다76726 판결 참조), 원고들은 망 I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속인인 망 K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위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.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본안에 관한 판단

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, 증인 L,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망 K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기현, 판사 최미영, 판사 박 민

목 록

1. 당진시 O 전 506㎡
2. 당진시 P 전 456㎡
3. 당진시 Q 전 149㎡
4. 당진시 R 전 932㎡
5. 당진시 S 대 184.8㎡
6. 당진시 T 전 1,041㎡. 끝.